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기술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인
사업주·근로자단체 관계자의 구체화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47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국가기술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인 사업주·근로자단체 관계자의 구체화	3

I. 제안경위

2025년 1월 15일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5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 3항).

Ⅲ. 검토의견

1. 국가기술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인 사업주·근로자단체 관계자의 구체화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인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의 관계자를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또는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3항제3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①·② (생략)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의 관계자</u>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u>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u> ----- <u>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u> 추천을 받은 사람 ----- -----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고 함)¹⁾는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조직으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이 담긴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정책심의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

-
- 1)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국가 등의 책무 중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 3의2.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의 선정 및 교육·훈련과정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직무분야 및 종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국가만이 검정(檢定)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확정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에 관한 사항
 7. 제23조제2항에 따른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8. 제24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과학기술, 직업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의 관계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정책심의회는 의결을 거쳐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을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⑥ 전문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정책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그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의 관계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구성됨.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임.²⁾

개정안은 정책심의회 위원 중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의 관계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또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정책심의회 위원인 사업주·근로자단체의 관계자를 전국적 규모의 근로자·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변경하여 각 단체의 대표성을 바탕으로 정책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맹 노동조합 조합원이 전체 노동조합원의 17.5%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 단위의 근로자·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이 정책심의회 위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가 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차장과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책심의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④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한정한다면 위원의 범위가 축소되어 산업현장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 선임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표> 2023년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 비교

구 분	인원수	비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160,162명	4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086,618명	39.7%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7,821명	0.3%
전국노동조합총연맹	1,441명	0.1%
국민통합노동조합총연맹	1,068명	0.0%
대한민국노동조합총연맹	511명	0.0%
미가맹	479,758명	17.5%
합 계	2,737,379명	100%

※ 자료 : 고용노동부, 『2023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2024.12.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시행 시 다양한 사업주단체 및 노동단체의 참여 축소가 우려된다면서, 위원 요건 변경의 필요성, 대표성 약화 우려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38